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12.



김 귀 화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 안 자: 김귀화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기존 규칙에 오기입 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귀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227
----------	----------

발의일자: 2021. 11. 25.

발 의 자: 김귀화,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 제17893호, 2022. 1. 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안 제1조)
- 나. 오기입 된 문구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규칙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야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 ----- ----- ----- -----.</p> <p>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 ----- ----- 작성하여 -----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칙】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 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

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야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제11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칙)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